

행복한 도민  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  
2015. 9. 11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0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  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봉희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‘안전총괄과장’ → ‘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’으로 변경  
(안 제3조제4항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제1항, 제7조, 제8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

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”를 “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력위원회”라”를 “위원회”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충청북도 안전총괄과장”을 “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협력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협력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에 따라 <u>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</u>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12조의2에 따른 <u>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<u>협력위원회</u>"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재난 발생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<u>협력위원회</u>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"<u>위원회</u>"라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u>발생 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u>위원회</u> ----- -----</p>
<p>제3조(구성) ① <u>협력위원회</u>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<u>협력위원회</u>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<u>충청북도 안전총괄과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<u>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<u>위원의 해촉</u>) 제3조제3항에</p>	<p>제5조(<u>위원의 위촉 해제</u>) -----</p>



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제6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

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.

-----  
-----위촉 해제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위촉 해제를 -----

제6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 
-----위원회의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 -----  
-----  
-----.

③ 위원회 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위원회  
-----  
-----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